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50호
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183호(2015.6.25.)로 결정·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399호(2018.12.6.)로 변경 결정·고시된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6일
서울특별시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가. 해제기한 연장구역

정비구역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	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	28,793.0	-

나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: 2022.01.17.까지

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
3. 관련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1) 및 강남구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63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51호
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56호(2010.12.16.)로 결정·고시된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6일
서울특별시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